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시 보

www.namwon.go.kr

선 람	기관의 장

제 27 호 2015. 3.10(화)

공 고

-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.....1
-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공고.....9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※ 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9

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: 2015. 02. .
 제출자: 남 원 시 장
 제안설명자: 경 제 과 장

1. 개정이유

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회계운영을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세입 항목을 명확하게 함(안 제2조)
- 나. 세출 항목에 관리분야 추가(안 제3조)
- 다.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(안 제4조)
- 라. 불합리한 조문 삭제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기 간 : 2015. 3. . ~ 2015. 3. .(20일간)
 - 결 과 :
 - 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기하기 위하여 남원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”를 “위하여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세입)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선수금
- 2. 기채전입금
- 3. 보조금
- 4. 분양지 매각대금
- 5. 부지임대료
- 6. 일반회계 전입금
- 7. 그 밖에 수입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토지매입비
- 2. 지장물보상비
- 3. 공업용지공사비
- 4. 부대시설비
- 5. 기채상환금

6. 그 밖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

제4조의 제목 “(예산의 이월)”을 “(세출예산의 이월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- 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
- 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비
- 3.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8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비

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 삭제

제7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남원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 위하여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----- ----- ----- ---</p>
<p>제2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<u>선수금, 기채전입금, 보조금 분양지 매각대금, 부지임대료,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</u></p>	<p>제2조(세입)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선수금</u> 2. <u>기채전입금</u> 3. <u>보조금</u> 4. <u>분양지 매각대금</u> 5. <u>부지임대료</u> 6. <u>일반회계 전입금</u> 7. <u>그 밖에 수입</u>
<p>제3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<u>토지매입비, 지장물보상비, 공업용지공사비, 부대시설비, 기채상환금, 기타 농공지구 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.</u></p>	<p>제3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토지매입비</u> 2. <u>지장물보상비</u> 3. <u>공업용지공사비</u> 4. <u>부대시설비</u>

제4조(예산의 이월) 특별회계의 당해년도 사업비로 사업을 완공치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<신 설>

5. 기채상환금

6. 그 밖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

제4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

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비

<신 설>

<신 설>

제5조(회계간 전용) 특별회계는 사업조성기간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3.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8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비

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 <삭 제>

제7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-----
-----.

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

◇ **비용추계 대상 여부**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**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**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-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1. **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**
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【붙임 1】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예고내용	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		
의견 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전화번호	
	주소		

검토의견(의견 제출내용)

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5년 월 일

제출자

(서명 또는 인)

남 원 시 장 귀하

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: 2015. 3. .
 제 출 자: 남 원 시 장
 제안설명자: 산 립 과 장

1. 개정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용료 감경에 관한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험·휴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6조의2)
- 나. 그 밖에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기 간 : 2015. 3. 10. ~ 2015. 3. 30.(20일간)
 - 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·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”를 “개장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당일날”을 “당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휴장하고자 하는”을 “휴장할”로, “전에 휴장 내용을”을 “전에”로, “등에 사전”을 “등에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사유로 인하여”를 “사유로”로, “않을”을 “아니할”로 한다.

제5조 제1항 중 “운영시간은 연중”을 “운영시간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때에는 이를”을 “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2항 중 “시 이를”을 “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람에 대하여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이하인 자”를 “이하”로, “이상인 자”를 “이상인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
제6조 제4항 제6호 중 “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”을 “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”으로 하고, 같은

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
제6조 제4항제8호 중 “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”을 “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 중 “남원시민 임을 확인 할”을 “시민임을 확인할”로, “남원시민”을 “시민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7조 제1항 본문 중 “사람에 대해서는”을 “사람에게”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람에 대하여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국민이나”를 “국민,”로 한다.

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위를 해”를 “행위를 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리자는”을 “시장은”으로, “사람에 대하여”를 “사람에게”로 한다.

제11조 제2항제1호 중 “사유로 인하여”를 “사유로”로, “전액 환불”을 “전액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전액 환불”을 “전액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80퍼센트 환불”을 “8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50퍼센트 환불”을 “50퍼센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“경우에는 전액 환불하지 아니한다”를 “경우 : 미반환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단”을 “다만”으로, “취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”을 “경우에는 전액 반환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환불”을 각각 “반환”으로 한다.

제12조 제1항제2호 중 “긴급히 개·보수”를 “긴급 개선·보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리자는”을 “시장은”으로, “경우 사유”를 “사유”로, “발생시 그리하지 않을”을 “발생 시에는 공고하지 아니할”로 한다.

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편의를 도모하기”를 “편의를”로 한다.

제1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손해배상에 따른 세부사항은 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남원시 물품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5조 제1항 단서 중 “다만, 시장은”을 “다만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”을 “위탁기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에 따라 시설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”을 “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”으로, “첨부하여”를 “붙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”를 “수탁자를 선정할 경우”로, “선정하고자 할 경우”를 “선정할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위탁 사용료 결정 등)”을 “(위탁 사용료 결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”를 “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위탁 사용료의 감경)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남원지역 농·특산품 및 공산품을 생산·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탁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제17조 제2항 중 “변경하고자 할 때는”을 “변경할 때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”을 “수탁자가 제1항”으로, “훼손한”을 “훼손할”로 한다.

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이행사항을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.

제18조 제2항 중 “공무원으로 하여금”을 “공무원에게”로, “있으며, 이 경우”를 “있으며,”로, “응하여야”를 “따라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취할”을 “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
2. 수탁자가 제1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
제19조 제1항 제3호 중 “수탁자의”를 “수탁자가”로, “미비하다”를 “없다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맞는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22조 중 “사항에 대하여는 「행정절차법」과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”를 “사항은 「행정절차법」, 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남원시 물품관리 조례」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3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별표 및 별지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입 장 료(제6조 관련)

구 분	입장료 (원)						비 고
	어른		청소년·군인		어린이		
	개인	단체	개인	단체	개인	단체	
체험·휴양시설	2,000	1,500	1,500	1,000	1,000	5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른 : 19세 이상 64세 이하 - 청소년·군인 :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 이 하 군인 - 어린이 : 7세 이상 12세 이하

* 단체 : 20명 이상

[별표 2]

시 설 사 용 료 (제7조 관련)

구 분	기준	인실	사용료(원)		비 고
			주중	주말	
트리하우스	1일	3명 이하	100,000	150,000	
	1일	4명 ~6명	120,000	170,000	

구 분	사 용 료(원)			비 고
	4시간	8시간	1일	
2층 교육장	100,000	140,000	210,000	· 냉·난방 시설 1회 30,000원 · 1회 기준 4시간 이내

[별지 제1호서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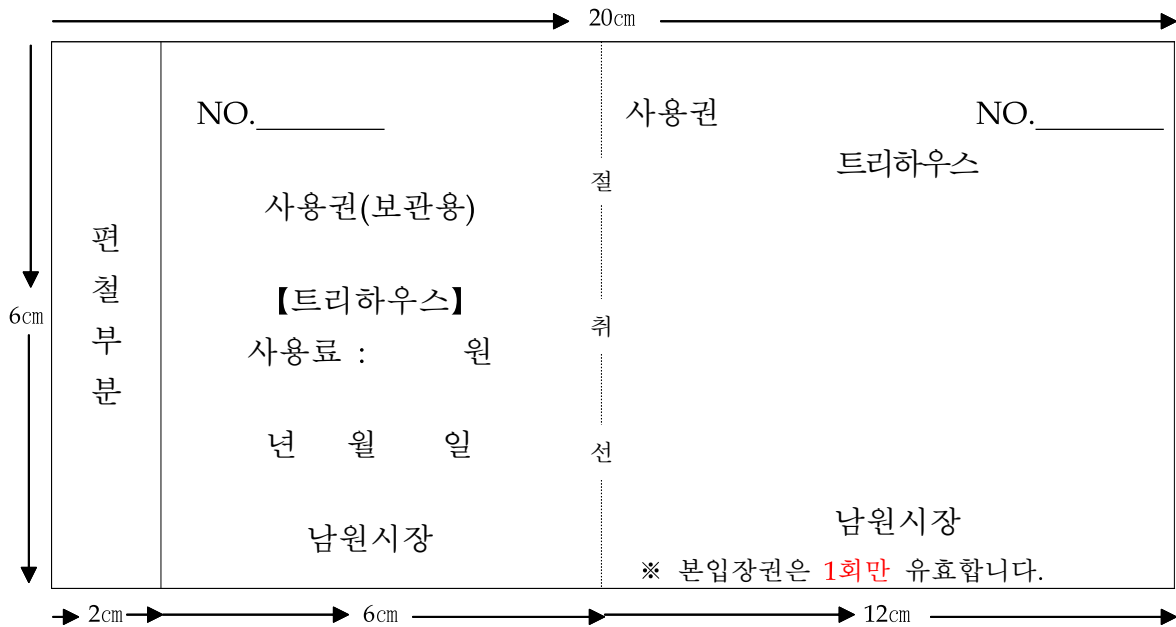
입 장 권(제6조 관련)

	20cm	
편 철 부 분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NO. _____</p> <p>체험·휴양시설 입장권(보관용)</p> <p>·어 른(개인2,000/단체1,500)</p> <p>·청소년(" 1,500/ " 1,000)</p> <p>·어린이(" 1,000/ " 500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남원시장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체험·휴양시설 입장권 NO. _____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대표사진)</p> <p>·어 른(개인2,000/단체1,500)</p> <p>·청소년(" 1,500/ " 1,000)</p> <p>·어린이(" 1,000/ " 500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남원시장</p> <p>※본 입장권은 당일에만 유효합니다.</p>
6cm	2cm	12c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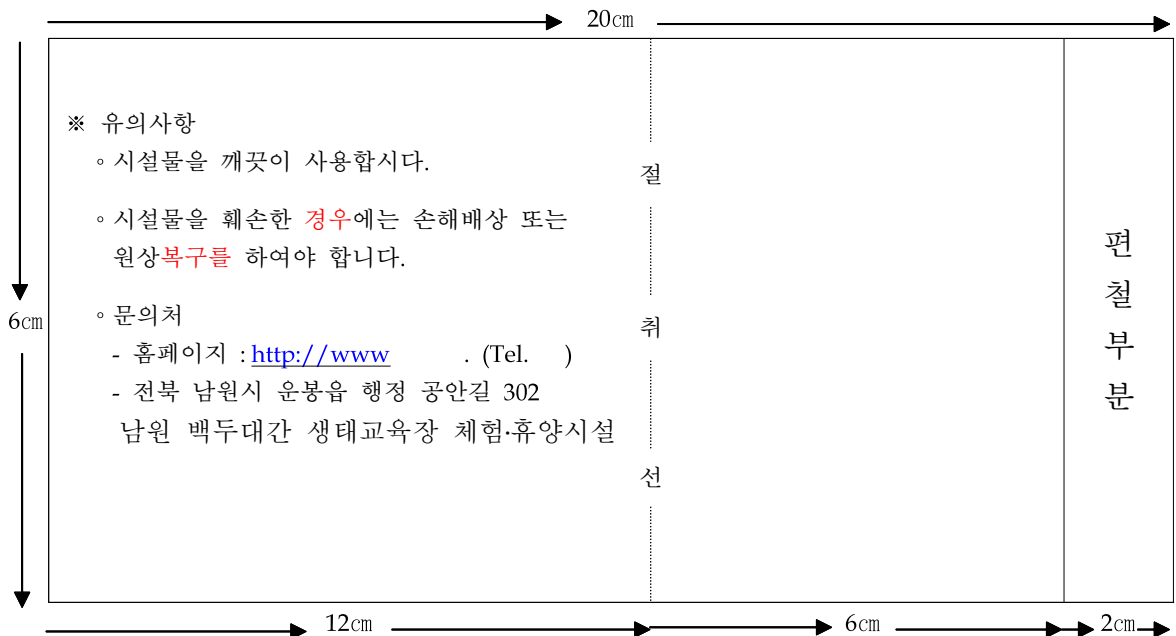
[별지 제2호서식]

1. 시설사용권 (트리하우스)

<전 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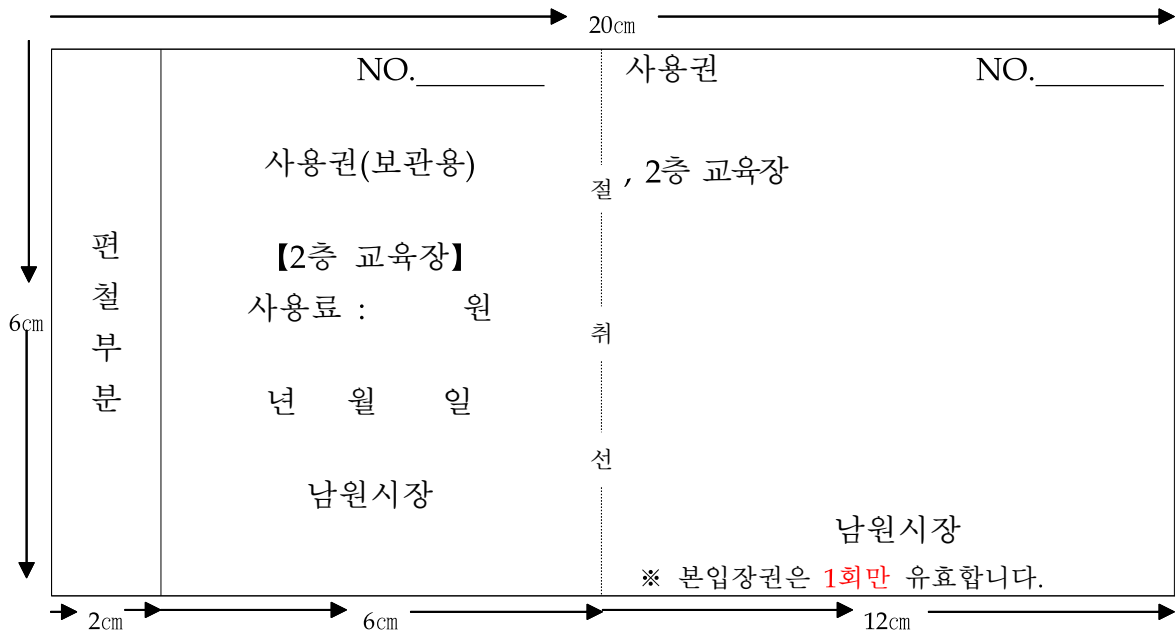


<후 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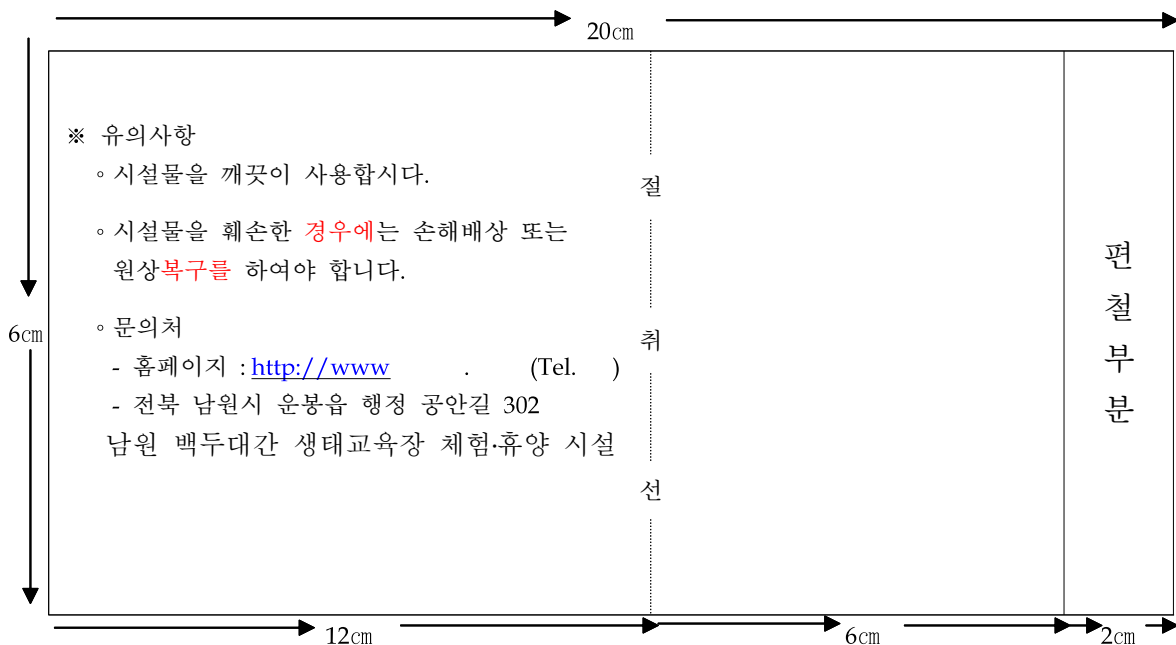


2. 시설사용권(2층 교육장)

<전 면>



<후 면>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개장 및 휴장) ① 체험·휴양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<u>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.</u></p> <p>1. 월요일(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) 및 설·추석 <u>당일</u> 날</p> <p>2.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험·휴양시설 점검 및 그밖에 사유로 <u>휴장하고자 하는</u> 경우에는 휴장 7일 <u>전에 휴장 내용을</u> 체험·휴양시설 게시판 및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홈페이지 <u>등에 사전</u>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긴급한 <u>사유로 인하여</u>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<u>않을</u> 수 있다.</p>	<p>제4조(개장 및 휴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개장한다.</u>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당일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휴장할</u> ----- <u>전에</u>----- ----- ----- <u>등에</u>----- ----- <u>사유</u> <u>로</u>----- ----- <u>아니할</u> -----.</p>
<p>제5조(관람 및 운영시간) ① 체험·휴양시설의 <u>운영시간은</u>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, 트리하우스 및 2층 교육장은 24시간 운영한다.</p>	<p>제5조(관람 및 운영시간) ① ---- ----- <u>운영시간</u> <u>은</u>----- ----- -----</p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입장료 등) ① (생략)

② 체험·휴양시설의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판매 시 이를 징수한다.

③ (생략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1.·2. (생략)

3. 만 6세 이하인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

4. (생략)

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
6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

7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

-----.

② -----

때에는-----.

제6조(입장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 시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사람은-----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이하-----
----- 이상인 사람

4. (현행과 같음)

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
6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-----

7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

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
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

8.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.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

9. (생략)

10. 남원시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남원시민으로 인정되는 사람

<신 설>

제7조(시설 사용료 등) ① 체험·휴양시설을 방문하여 트리하우스 및 2층 교육장(이하 “시설물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체험·휴양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
등록된 참전유공자

8. 「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

9. (현행과 같음)

10. 시민임을 확인할

11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7조(시설 사용료 등) ① 사람에게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시설 사용료 면제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- 1. 국민이나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- 2. 3. (생략)

제10조(행위제한) ① 체험·휴양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- 1. ~ 6. (생략)
-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11조(사용의 예약 및 반환) ① (생략)

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- 1.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

제8조(시설 사용료 면제 등) -----

----- 사람

은-----

- 1. 국민,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행위제한) ① -----

----- 행위를 하여-----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시장은-----

----- 사람에게-----
-----.

제11조(사용의 예약 및 반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- 1. -----
----- 사유로-----

불가능하게 된 경우 : 전액 환
불

2. 사용일 5일 전까지 미리 신고
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
경우 : 전액 환불

3. 사용일 2일 전까지 미리 신고
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
경우 : 80퍼센트 환불

4.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
우 : 50퍼센트 환불

5. 사용 당일 취소 및 사용일이
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사용
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전
액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단, 특
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
대해서는 전액 환불할 수 있
다.

③ 환불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
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환불하는
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2조(사용제한) ① 시장은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
수 있다.

1. (생 략)

----- 전액

2. -----

----- 전액

3. -----

----- 80퍼센트

4. -----
----- 50퍼센트

5. -----

----- 경우 : 미반
환. 다만-----
----- 경우에는 전액
반환-----.

③ 반환-----

----- 반환-----.

제12조(사용제한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시설물을 긴급히 개·보수
하는 경우

3.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
이 예상되는 경우

4.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
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
단되는 경우

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
발생 즉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
여 공고하여야하며 재난 등 긴
급한 상황 발생시 그리하지 않
을 수 있다.

제13조(편의시설 설치·운영) 시
장은 체험·휴양시설 이용객들
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
험·휴양시설 내외에 다음 각
호의 편의시설을 설치·운영할
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제14조(손해배상 등) ① (생략)

② 배상(변상)에 관한 세부사항
은 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
례」 및 「남원시 물품관리 조
례」를 준용한다.

2. ----- 긴급 개선·보
수 -----

3.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
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
단되는 경우

<삭 제>

② 시장은-----

사유-----

----- 발생 시
에는 공고하지 아니할-----.

제13조(편의시설 설치·운영) --

----- 편의를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손해배상 등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손해배상에 따른 세부사항은
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
및 「남원시 물품관리 조례」를
준용한다.

한다.

제16조(위탁 사용료 결정 등) 위
탁 사용료는 「남원시 공유재산
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<신 설>

제17조(수탁자의 의무) ① (생
략)

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
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
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
아야 한다.

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
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
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
배상하여야 한다.

제18조(관리감독) ① 시장은 이
조례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이
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 및
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
여급 위탁 운영상황을 연 1회

-----.

제16조(위탁 사용료 결정) -----
----- 「남원시 공유재
산 관리 조례」-----.

제16조의2(위탁 사용료의 감경)
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
여할 수 있는 남원지역 농·특
산품 및 공산품을 생산·전시
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탁 사
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
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제17조(수탁자의 의무) ① (현행
과 같음)

② -----

--- 변경할 때에는-----
-----.

③ 수탁자가 제1항-----

----- 훼손할 -----
-----.

제18조(관리감독) ① 시장은 제17
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이행
사항을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
다.

② ----- 공무원에게

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
게 하거나, 장부 및 그 밖의 서
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이
경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
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
과 시정하여 할 내용이 발생한
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
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9조(위탁의 취소) ① 시장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
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이행
하지 않았을 경우
2.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
무·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
3.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미비
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4. (생략)

제20조(서류 등의 비치) 수탁자는
체험·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에
맞는 서류 등을 비치하여 관리

----- 있으며,-----

--- 따라야---

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
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
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
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
여야 한다.

제19조(위탁의 취소) ① -----

----- 할-----

1.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의
무 등을 위반한 경우
2. 수탁자가 제18조에 따른 명
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3. 수탁자가 -----
없다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서류 등의 비치) -----

----- 따른-----

하여야 한다.

제22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행정절차법」과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2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
-----.

제22조(준용규정) -----
----- 사항은 「행정절차법」, 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남원시 물품관리 조례」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-----.

제23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-----
-----.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<p>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5년 월 일</p> <p>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전 화 :</p> <p>남원시장 귀하</p>		
비 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